

무궁화3호(P-1)

370만원 (25,000원 × 148회)

* 우대할인이 적용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항목에 V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해경·소방 특별할인 330만원 □ 25,000원×132회

계약자 (서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男 □ 女
주소 □ 직장 □택 (직장명) ()
전화번호 휴대폰
은행명 계좌번호
가입구좌 □ 1구좌 □ 2구좌 기타(구좌) 이체일자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제공서비스

Table with 2 columns: 구분, 내용. Includes sections for 인력지원, 고인용품, 의전용품, 빈소 및 발인용품, 장례용품, 차량 지원, 서비스, 장례상품 이용안내, 계약자 유의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귀사와의 거래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의 생년월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 결제정보(예금주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용카드사명,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 수집, 이용 목적
- 청약, 계약의 체결, 상환, 위임 등 의전행사 진행, 회원 유지관리, 우편물, 휴대폰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발송, CMS출금 등을 통한 결제, 신용카드 결제, 각종 서비스의 제공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수집, 이용 목적 달성할 때 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20년 월 일 신창인: (서명)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 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시간별인 금융결제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케이뱅크, 주식회사 지에이(씨티), 외주업무 대행업체(주주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및 출금금의 확인, 결제정보 제공, 소비자피해보상 예치계좌 및 유지관리, 신용카드 가계입금, 회원 유지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계약서비스의 제공, 부가서비스의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의 생년월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 결제정보(예금주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용카드사,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수집, 이용 목적 달성할 때 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20년 월 일 신창인: (서명)
* 신창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체결, 의전행사 진행 및 기타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가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활용 동의]
- 이용 목적: 상품권 안내, 회원우대서비스 안내, 각종 이벤트 및 시연행사 안내, 제휴사 및 협력사의 광고성 정보 전송업무 내행 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개인(신용)정보의 생년월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창인은 개인정보(신용)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라이프의 이벤트 및 회원우대서비스 안내, 각종 정보 안내 등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년 월 일 신창인: (서명)

☑ 전한사용 여부 부분

1) 가입하신 상품은 장례상품, 웨딩상품, 수련상품, 여행상품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여행상품은 여행 일정에 따라 이용금액이 다르며, 가입 상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영사 홈페이지(www.kwlife.co.kr)나 콜센터(1588-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 사항 (회사정보, 상품의 종류 및 내용, 청약철회 안내, 선수금 보전비용, 약관, 여행상품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 모인입 () 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여 청약서를 수령합니다.
계약자: (서명)

☑ 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 계약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 男 □ 女)
성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하고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년 월 일 예금주: (서명)

모집인 소속 시원코드 성명 (서명) 연락처

계약일자 : 20년 월 일

소비자피해 보상증서 발급 설명서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등의 계약기간: 공적거래 중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자동 갱신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당사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미리 수령한 금액 - 당사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0.0001(1%) × [] : 2% (2013.03.01~2013.03.31), 3% (2013.03.31~2013.03.31), 4% (2013.03.31~2014.03.31), 5% (2014.03.31~)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지급의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 당사 (주)경우라이프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 예치계좌를 체결한 상호입자입니다.
• 당사의 국민은행과의 예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귀하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증서를 배부합니다. 배부기간은 본 상호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 보상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화: 1588-0966)에 연락하여 예치계좌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귀해 명의의 소비자피해 보상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향후 영수 영사기 폐업, 등록취소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 호의 지급사유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모집인:)는 소비자피해 보상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성실히 선수금 신고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입일자 : 20년 월 일 소비자 (성명): (서명)

24시간 장례접수 및 고객상담 전화
1588-4314
www.kwlife.co.kr

(주)경우라이프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6호
(2014.09.1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주)경우라이프(이하 '회사'라 칭함)”와 “가입신청자(이하 '회원'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은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부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울분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입하기 전 약관을 제시하고 약관의 중요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송금, CMS 출금이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통장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추가 영수증의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포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2회 이상부터는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해 줄 수 있다.
(예: 5,000원 / 기 경우 이비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영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대상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청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청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항의 철회권 행사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제회 보합료를 신용카드로 입제한 계약의 청약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상품금액	월납입금	납입회수
일반회원가	3,700,000원	25,000원	148회
우대회원가	3,300,000원	25,000원	132회
		12,500원	264회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CMS출금이체, 신용카드결제 등을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직접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부금납입증명, 통장 거래내역,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선납할인)
해당사항 없음

제7조 (비용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음

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원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정례행사 종료 시 (발인 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주변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부무를 면하게 된다.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지역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 산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제공 가능)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외(연6%)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통신매체 혹은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해약환급금 산식)
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공제액
(단, 1원 단위는 절사, 환급금이 (-)인 경우는 0으로 함)

· 상조적립금 = 납입금누계 - 관리비누계
· 모집수당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frac{\text{가입납입금}}{\text{총납입기간 월수}}$)

※ 모집수당은 최대 10%(상품금액 대비), 관리비는 최대 5% (상품금액 대비)를 넘지 않도록 계산함

일반회원가 370만원 | 납입회수 148회

납입회차	1회~12회	40회	60회	80회	100회	120회	148회	민기전 후
환급률	0%	64.8%	74.0%	78.6%	81.4%	83.3%	85.0%	100%

우대회원가 330만원 | 납입회수 132회

납입회차	1회~10회	20회	40회	60회	80회	100회	132회	민기전 후
환급률	0%	43.0%	67.8%	76.0%	80.1%	82.6%	85.0%	100%

우대회원가 330만원 | 납입회수 264회

납입회차	1회~10회	40회	80회	120회	160회	200회	264회	민기전 후
환급률	0%	43.0%	67.8%	76.0%	80.1%	82.6%	85.0%	100%

※ "민기전 후"란, 납입회수 및 납입기간이 모두 지나고 난 뒤 1년 후를 의미한다.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납입된 금액이 대상이 되어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해약신청서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지위 양도를 위해 양도 신청을 하기 전에 미납 월부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 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을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세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문의 및 상담)
이 계약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주식회사 경우라이프 고객센터(1588-4314)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 정보 고시사항

중도 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환급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규정에 의거 환급됩니다.
· 환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 (2021년 12월 기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자산
52,416,187,290원	64,099,657,382원

*당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2항에 따라 보전하는 총 보전금액 비율 50%.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

용품 및 서비스 내용
· 본 청약서 앞면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객 불입금 관리 시스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서울특별시청에 필요하였으나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예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 : 고객불입금의 50%는 국민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서

본인은 (주)경우라이프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귀사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철회를 신청합니다

회 원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男 <input type="checkbox"/> 女)
구 좌 수		금 액		
철회 사유		연 락 처		
환 급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철회신청일	20	년 월 일

청약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이 청약철회 신청서와 신분증사본을 당사에 FAX로 송부한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인쇄일 : 2023년 02월 06일